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5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62억 5천만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임.

○ 검토 결과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 고금리 장기화로 기인하여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2025년도 출연금 4억원에서 2026년도 출연금을 5억원으로 1억원 증가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짐.
-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번 호	제647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다. 내용

1)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원)

출연기관	출연금	보증규모	사업명
서울신용보증재단	500,000	6,250,000	특례보증 지원사업

2) 신용보증재단 출연 필요성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
- 출연금의 12.5배 한도로 보증 지원
 - * 5억원 출연 ⇒ 62.5억원 한도 신용보증 지원
 - * 금융기관 연계 출연(매칭출연) 시 보증한도 확대 가능

3.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5.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